

物中 再活用이 되지 않는 종말처리품에 대한 처리방법, 장소 및 절차 등의 대책이 전무한데다 주택구구식의 산만한 野積과 廢棄物 放置 등으로 각종 有害物質이 인근 주택가에 흘러들어가고, 廢棄物 운반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環境公害로 인하여 동 시설은 麻浦區民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었음.

1994년 10월 29일 동 시설의 野積場에서 발생한 화재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메탄가스에 의한 發火危險性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火災豫防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大型生活廢棄物을 과다하게 반입하여 再活用후 발생된 廢棄物인 우레탄, 쇼파, 침대매트리스 등을 처리하지 않고 1만 1천여톤의 쓰레기를 악적하였던 바, 1996년 2월 13일 종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또다시 大型 火災가 발생한 것은 서울特別市와 韓國資源再生公社의 安逸하고 無責任한 행정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음. 금번 3일간 계속된 火災로 인하여 상암동, 성산동 및 망원동 일대는 煙과 惡臭, 有毒性ガス로 뒤덮였고 인근 주민들은 두통, 눈통증, 기관지 등의 이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住民健康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蘭芝島 쓰레기 埋立過程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으며 더욱이 최근 이러한 有害性 廢棄物의 반입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麻浦區議會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즉각 蘭芝島에서 철수하고 大型廢棄物處理工場을 즉각 이전하라.

2. 蘭芝島 埋立地 被害와 火災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서울特別市는 즉각 보상하고 현재 건설중인 破碎處理施設도 즉각 중단하라.

3. 악적된 大型生活쓰레기를 즉각 처리하고 계속 반입되고 있는 大型生活廢棄物의 반입을 일체 중단하라.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오니 우리 委員會에서 채택한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宗一 廣東均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韓國資源再生公社서울大型廢棄物處理工場移轉促求決議案에 대하여 여러 議員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이것으로써 4일간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附議된 案件審議를 위해 수고하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換節期여서 날씨변동이 조석간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臨時會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0分 散會)

○出席議員(30人)

李宗一	韓賢應	惠應相	鳳撲植
金星煥	李大相	大相載	天英吉
金順錦	沈煥運	相載性	映東
金鍾烈	洪運暉	大運暉	晚在
鄭聖軒	韓暉田	平暉田	七善
俞南烈	金大東	仁暉田	均構
朴相洙	金東平	守仁暉	均均
金忠煥	李平仁	均暉田	均範
金孝詰	韓仁守	均暉田	
金裕顯	李均守	均暉田	

○出席公務員

區廳長	盧承煥
副區廳長	金賢鍾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局長	梁龍浩
財務局長	文忠實
市民局長	尹汝基
都市整備局長	李春基
建設局長	申東文
總務課長	文昇昇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3. 30.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6. 3.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가. 개정이유

國家有功者에 대한 免許稅 減免對象을 확대하고 老人福祉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地方稅를 減免하는 등自治團體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國家有功者에 대한 보철용자동차 免許稅 減免規定을 확대(안 제2조)
- 老人福祉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產에 대하여 財產稅의 100분의 50을, 綜合土地稅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社會教育施設등 지원을 위한 減免規定에 科學館育成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안 제5조)
- 賃貸住宅에 대한 감면규정에 당해 永久賃貸住宅團地案의 福利施設(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까지 확대(안 제12조 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地方自治團體가 정책적으로 당해 地方稅에 대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内務部長官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 지난 '95년 12월 4일자 内務部長官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증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國家有功者가 사용하는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노인

복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및 유료노인 복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 경감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된 한시적 조례로 内務部長官으로부터 동 개정안이 시달된 시점 등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현행 법령규정상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質疑要旨(이인구 위원) : 개정조례안 내용 중 보철용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를 의미하는가?
- 答辯要旨(김종열 과장) :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함.
- 質疑要旨(이인구 위원) : 우리구 관내에 科學館이 있는가?
- 答辯要旨(김종열 과장) : 현재는 없으나 장래에 科學館이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條例案에 포함시킴
- 質疑要旨(정만직 위원) : 본 條例案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住民福祉 차원에서 상위지침등을 기다리지 말고 能動的으로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
- 答辯要旨(김종열 과장) : 노력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原案可決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68
번 호	

제출 일자 : 1996. 3. 20.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용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을 확대(안 제2조)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 2)
-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안 제5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당해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까지 확대(안 제12조2항)
- 3.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제5069호) 제15조
 - 지방세법(1995. 12. 6. 법률제4995호) 제9조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별표1]의 “상이등급 분류표”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 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삭 제)</p>
<p><신 설></p>	<p>제4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1.~6.(생략)</p>	<p>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